## 의료인 간 원격의료 관련 법령 (의료법 등)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워격진료실
-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운영(안)

#### □ 목 적

○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수가 및 급여 기준(안) 논의 및 의견 수렴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8.21(목) 1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참석자
  -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7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2명, 학계 3명, 복지부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등

#### □ 주요 논의 내용

- 의료인간 원격의료 현황 및 형태
-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
  - 보험급여 적용 범위, 수가 수준, 적용 기준 등

#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황

# □ 진찰료

구분	상대가치 점수				단가 (원)							
	초진			재진			초진			재진		
	진찰	기본진	외래관	진찰료	기본진	외래관	진찰	기본진	외래	진찰	기본	외래
	료	찰료	리료	진절묘	찰료	리료	료	찰	관리	료	진찰	관리
상급	255.79	155.57	100.22	198.31	98.03	100.28	17,600	10,700	6,900	13,640	6,740	6,900
병원		(60.8)	(39.2)		(49.4)	(50.6)						
종합	232.33	155.57	76.76	174.84	98.03	76.81	15,980	10,700	5,280	12,030	6,740	5,290
병원		(67.0)	(33.0)		(56.1)	(43.9)						
병원	208.86	155.57	53.29	151.37	98.03	53.34	14,370	10,700	3,670	10,410	6,740	3,670
		(74.5)	(25.5)		(64.8)	(35.2)						
의원	188.11	155.57	32.54	134.47	98.03	36.44	13,580	11,230	2,350	9,710	7,080	2,630
		(82.7)	(17.3)		(72.9)	(27.1)						

#### ☐ Full PACS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산정 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 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매에 대해서 산정

<2014년 기준>

<2009년 기준>

구분	상대가치점수	단가(원)
상급종합	19.08	1,310
종합병원	14.36	990
병원	10.14	700
의원	10.08	730

구분	상대가치점수	단가(원)
상급종합	35.24	2,420
종합병원	30.03	2,070
병원	21.43	1,470
의원	21.41	1,540

- ※ 제2매부터는 소정 점수의 50%씩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인정
- ※ 초기구축비용, 장비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하여 수가 도입(2009년) 후 연도별로 수가 단계적 차감

## □ 보건기관 진료 수가

	구분	상대가치 점수	단가(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1회 방문당	40.37	2,870	
보건지소 진료비	의과진료비(1회 방문당)	55.75	3,960	
	치과진료비(1회 방문당)	63.44	4,500	
보건소 진료비	의과진료비(1회 방문당)	63.44	4,500	
보신도 신표미	치과진료비(1회 방문당)	63.44	4,500	
	침술, 구술, 부항술 실시	63.44	4,500	
보건(지)소   한방진료비	투약만 한 경우 (1회 방문당)	67.28	<b>4,7</b> 80	
	시술행위와 투약 병행 (1회 방문당)	80.74	5 <i>,</i> 730	